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대전보건대학교 학칙	**대전보건대학교 학칙**
제1조 - 제7조 생략	**제1조 - 제7조** 좌동
제8조(조직) ①본 대학교에는 청렴감사실, 기획처, 교무처, 학생·취업처, 입학처, 사무처를 두며 실 및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.	**제8조(조직)** ①본 대학교에는 기획처, 교무처, 학생·취업처, 입학처 및 사무처를 **둔다.**
1. 기획처에는 기획팀, 대학성과·IR센터, 대학정보관리팀, 지역사회협력센터를 둔다.	1. **삭제**
1-2. 생략	1-2. 좌동
2. 교무처에는 교무팀, 학사학위센터, 직업교육혁신센터, 직업교육컨텐츠연구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.	2. **삭제**
3. 학생·취업처에는 학생팀, 취업지원센터, 직업이음센터, 자원봉사센터, 장애학생지원센터, 예비군 대대를 두며, 학생팀에 건강관리실(보건, 상담)을 둔다.	3. **삭제**
3-2. 입학처에는 입학·홍보팀을 둔다.	3-2. **삭제**
4. 생략	4. 좌동
5. 사무처에는 총무팀, 관리팀, 기숙사를 둔다.	5. **삭제**
6. 생략	6. 좌동
②실에는 실장, 단에는 단장, 각 처에는 처장, 팀에는 팀장,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실장, 단장,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실, 단, 처 내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**②각 처에는 팀과 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,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.**
③각 실, 처, 단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**③본 대학교에는 필요에 따라 실·본부·단·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설치·운영에 관한**

현 행	개 정
	세부사항은 대학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.
<신설>	④학칙상의 스쿨 및 학과(부) 외에 교양·교직 운영(학)과를 설치하고, 교양·교직 과정을 둘 수 있다.
제8조의2 생략	제8조의2 좌동
제8조의3(글로컬사업본부) ①글로컬사업본부에는 글로컬사업단을 둔다. ②글로컬사업단의 조직 및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8조의3 삭제
제8조의4(국제교류원) ①본 대학교에 국제교류원을 둔다. ②국제교류원의 조직 및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제8조의4 삭제
제8조의5(준용규정)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대학 직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	제8조의5 삭제
제9조 - 제37조 생략	제9조 - 제37조 좌동
제38조(수업) ①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주말수업, 계절수업,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	제38조(수업) ①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주말수업, 계절수업,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, 비교과 수업, 학교 밖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② - ⑦ 생략	② - ⑦ 좌동
제38조 - 제80조 생략	제38조 - 제80조 좌동
제17장 부속(교육)기관 및 부설기관	제17장 부속 및 부설기관

현 행	개 정
제81조(부속(교육) 및 부설기관) ①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(교육)기관을 둔다.	제81조(부속 및 부설기관) ①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**부속기관**을 둔다.
1. - 8. 생략	1. - 8. 좌동
② 생략	② 좌동
③본 대학교에는 필요에 따라 기타의 부설기관을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	**③본 대학교에 제1항 이외의 부속 및 부설기관, 연구소, 위탁기관 등을 둘 수 있으며 설치는 대학 직제규정에 따른다.**
<신 설>	**④부속 및 부설기관, 연구소, 위탁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**
<신 설>	**부 칙**
	①(시행일) 이 학칙은 2026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.